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0
----------	-----

제출연월일 : 2006. 6.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6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규정에 부합된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체납 발생일부터 2년, 체납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4)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 (안 제21조)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개정 필요

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문신설 필요

(안 제21조의3)

라.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을 50%에서 토지 및 건물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 주택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 100%적용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 제69조의2

○ 서울특별시 세제과 - 1325(2006. 2. 7) 구세 조례 개정표준안 공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로 한다.

제14조의3 다음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 다음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세무관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p> <p>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p> <p>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④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p>